



#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3-3a블록

■ **공급대상** : A3-3a블록 공공분양주택 336세대 중 잔여 4세대 (전용면적 51㎡ 1세대, 59㎡ 3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2023.06.30~2023.08.28)이 도래하는 단지로,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읍선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3~4 참고)**

## 알 려 드 린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2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0.08) 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4호)**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례 A3-3a블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http://wirye3a.com>)** 및 팸플릿으로 대체되었으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품목 등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총 75세대,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73세대 및 가정어린이집 2세대)과 공공분양주택(336세대)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본 단지는 LH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ANDANTE**를 적용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정상 마이너스옵션, 추가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과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세대별로 기설치되어 있는 읍선내역으로 계약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위례 A3-3a블록 기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서역세권 A3블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함에 따라,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수서역세권 A3블록에 중복청약 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2023.03.24) 기준 위례 A3-3a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위례 A3-3a블록 최초 모집 공고('20.10.08 공고)시 당첨자,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공고일(2023.03.24) 기준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닐 경우**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동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닐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1.02)	8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23.06.30)	5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3.24(금)	4.3(월) 10:00 ~ 4.4(화) 17:00	4.14(금) (16:00)	4.17(월) ~ 4.18(화) (10:00 ~ 17:00)	6.22(목) ~ 6.23(금) (10:00 ~ 17: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신청만 가능			위례 홍보관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8호선-분당선 복정역 1번출구 앞))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0.08)를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위례 택지개발지구 A3-3a블록 : 전용면적 60㎡이하 14~25층 6개동 공공분양주택 336세대 중 4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지정 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합계	기계약 공공분양				금회공급 공공분양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336	332	4	-	11			
위례 A3-3a	051.9800A	51	확장	51.98	19.7960	7.0054	41.4622	120.2436	38.1391	107	106	1	25	3	'23.06.30 ~ 08.28
	059.7600A	59A	확장	59.76	22.7589	8.0539	47.6680	138.2408	43.8475	106	105	1	25	4	
	059.9500B	59B	확장	59.95	22.8313	8.0795	47.8195	138.6803	43.9870	84	82	2	22	3	
	059.7100C	59C	확장	59.71	22.7399	8.0472	47.6281	138.1252	43.8109	2	2	-	14	0	
	059.9200D	59D	확장	59.92	22.8199	8.0755	47.7956	138.6110	43.9650	37	37	-	22	1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년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동호수	타입	주택가격	계약시(10%)		입주시(90%)	
					계약금	잔금	용자금(주택도시자금)	잔금
051.9800A	51	3102-403	기본형	439,400	43,940	340,460	55,000	
059.7600A	59A	3104-402	기본형	500,120	50,010	395,110		
059.9500B	59B	3106-303	기본형	486,650	48,660	382,990		
		3104-901	기본형	501,710	50,170	396,54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외의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4. 발코니 확장금액 (전세대 확장 시공)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계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납부방식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1 (3102-403)	기본공사비(A)	61,313	20,176	3,696	0	10,756	26,685		
	확장공사비(B)	68,495	22,082	4,069	0	11,980	30,364		
	<b>계약자부담액(B-A)</b>	<b>7,182</b>	<b>1,906</b>	<b>373</b>	<b>0</b>	<b>1,224</b>	<b>3,679</b>	<b>1,000</b>	<b>6,182</b>
59A (3104-402)	기본공사비(A)	69,037	18,357	3,701	5,601	17,055	24,323		
	확장공사비(B)	76,281	19,819	4,168	6,328	18,565	27,401		
	<b>계약자부담액(B-A)</b>	<b>7,244</b>	<b>1,462</b>	<b>467</b>	<b>727</b>	<b>1,510</b>	<b>3,078</b>	<b>1,000</b>	<b>6,244</b>
59B (3104-901, 3106-303)	기본공사비(A)	68,003	16,710	7,035	8,326	14,951	20,981		
	확장공사비(B)	77,759	18,118	8,638	10,223	16,641	24,140		
	<b>계약자부담액(B-A)</b>	<b>9,756</b>	<b>1,408</b>	<b>1,603</b>	<b>1,897</b>	<b>1,690</b>	<b>3,159</b>	<b>1,000</b>	<b>8,756</b>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항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공간선택안내

-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전 세대 기본형)**으로 시공되었으니,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http://wirye3a.com>) 및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션) 안내

-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으로 시공되었으니,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http://wirye3a.com>) 및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욕실 수전은 무상옵션**)
- ※ 각 옵션에 기재된 번호는 **팸플릿에 기재된 타입별 옵션 번호**이오니, 팸플릿 확인 시 참고바랍니다.

(단위 : 천원)

타입	동호수	유형	옵션내용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51	3102-403	가구	[2] 현관 중문	1,057	105	952	
			[3]-2 드레스룸SET (화장대+드레스룸+경량벽체)	2,193	219	1,974	
			[4]-2 냉장고장+주방 키르장	194	19	175	[4] 선택 시 [11] 냉장고 옵션 선택 불가
			[5]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 (주방상판+주방벽)	828	82	746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5]) 함께 선택 시
			[6] 아일랜드 식탁 [5] 함께 선택 시(엔지니어스톤)	893	89	804	아일랜드식탁에도 엔지니어스톤 상판 마감 적용
			[7] 침실1 불박이장	1,870	187	1,683	
		가전	[8] 침실2 불박이장	620	62	558	
			[9]-2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	5,878	587	5,291	
			[10]-3 인덕션 3구	354	35	319	
		수전	[11] 빌트인 냉장고 옵션 : 미선택	-	-	-	
			[12] 빌트인 오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 하부장 설치
			[13] 선반형 샤워수전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일반형 수전 설치
59A	3104-402	가구	[2] 현관 중문	785	78	707	
			[3] 드레스룸SET (화장대+드레스룸+경량벽체)	3,461	346	3,115	
			[4] 냉장고장+주방 키르장	179	17	162	[4] 선택 시 [12] 냉장고 옵션 선택 불가
			[5]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 (주방상판+주방벽)	977	97	880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5]) 함께 선택 시
			[6] 아일랜드 식탁 [5] 함께 선택 시(엔지니어스톤)	893	89	804	아일랜드식탁에도 엔지니어스톤 상판 마감 적용
			[7] 침실1 불박이장	1,870	187	1,683	
			[8] 침실3 불박이장	620	62	558	

59B	3104 - 901	가전	[9]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수납장	225	22	203	
			[10]-1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	3,687	368	3,319	
			[11]-3 인덕션 3구	354	35	319	
		수전	[12] 빌트인 냉장고 옵션 : 미선택	-	-	-	
			[13] 빌트인 오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 하부장 설치
			[14] 선반형 욕조수전 (공용욕실) 및 수납일체형 샤워수전 (부부욕실) (무상)	무상옵션	-	-	
			[2] 현관 중문	1,047	104	943	
	가구	[3] 드레스룸 옵션 : 미선택	-	-	-	(기본) 공간만 제공	
		[4] 냉장고장 옵션 : 미선택	-	-	-	(기본)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5]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가구 상판 MMA + 주방벽 타일 마감	
		[6] 아일랜드 식탁 옵션 : 미선택	-	-	-		
		[7] 침실1 불박이장 옵션 : 미선택	-	-	-		
		[8] 침실2 불박이장 옵션 : 미선택	-	-	-		
		[9]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수납장	225	22	203		
가전	[10] 시스템에어컨 옵션 : 미선택	-	-	-			
	[11]-3 인덕션 3구	354	35	319			
	[12] 빌트인 냉장고 옵션 : 미선택	-	-	-			
	[13] 빌트인 오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 하부장 설치		
	[14] 선반형 샤워수전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일반형 수전 설치		
59B	3106 - 303	가구	[2] 현관 중문	1,047	104	943	
			[3] 드레스룸SET (화장대+드레스룸+경량벽체)	2,880	288	2,592	
			[4] 냉장고장 옵션 : 미선택	-	-	-	(기본)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5]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마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가구 상판 MMA + 주방벽 타일 마감
		가전	[6] 아일랜드 식탁 옵션 : 미선택	-	-	-	
			[7] 침실1 불박이장	1,870	187	1,683	
			[8] 침실2 불박이장 옵션 : 미선택	-	-	-	
			[9]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수납장 옵션 : 미선택	-	-	-	
	수전	[10]-2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443	744	6,699		
		[11] 주방(쿡탑) 옵션 : 미선택	-	-	-	(기본) 가스하이브리드룩탑(하이라이트 2+가스 1) 제공	
	가전	[12] 빌트인 냉장고 옵션 : 미선택	-	-	-		
		[13] 빌트인 오븐 옵션 : 미선택	-	-	-	(기본) 주방 하부장 설치	
		[14] 선반형 욕조수전 (공용욕실) 및 수납일체형 샤워수전 (부부욕실) (무상)	무상옵션	-	-		
		[14] 선반형 욕조수전 (공용욕실) 및 수납일체형 샤워수전 (부부욕실) (무상)	무상옵션	-	-		

###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출봉은 잔금납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지정기간은 2023.06.30~2023.08.28이며,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입주개시일 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I 신청자격(거주지역, 무주택)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 적발 시 계약해제).
  - ※ 공고일(2023.03.24) 기준 **위례 A3-3a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최초 모집공고('20.10.08 공고)시 당첨자,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 공고일(2023.03.24) 기준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04.14.)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금회 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Ⅲ 신청 시 확인사항**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단지 최초 모집공고 당첨자발표일(2020.11.02.)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2. 거주무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서역세권 A3블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함에 따라,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수서역세권 A3블록에 중복청약 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잔여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신청자 수가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우리 공사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3.04.03(월) 10:00 ~ 04.04(화)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430-4771)

## 3. 신청방법(PC인터넷·모바일 신청)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 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 처리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자)	계약체결(당첨자)
2023.04.14(금) (16:00)	2023.04.17(월) ~ 04.18(화) (10:00 ~ 17:00)	2023.06.22(목) ~ 06.23(금) (10:00 ~ 17: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위례 홍보관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8호선·분당선 복정역 1번출구 앞))	위례 홍보관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8호선·분당선 복정역 1번출구 앞))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 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2023.04.17(월)~04.18(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⑤ 신분증	본인	•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1,000천원) +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③ 도장 (본인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도장(인감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회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포함)의 1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위례 홍보관 및 위례 A3-3a블록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문의
<p>■ PC 및 모바일 : <a href="http://wirye3a.com">http://wirye3a.com</a></p>	<p>■ 위례 홍보관 : 02-430-4771 (09:00 ~ 17:00)</p> <p>■ LH콜센터 : 1600-1004 (09:00 ~ 18:00)</p>